

제206회 제2차 정례회
의회운영위원회 (2014.12.09)

의안 검토 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[전문위원 류현복]

<의안번호 제2014 - 95호>

**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
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**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. 11. 25.

나. 제 출 자 : 이성복 · 강철우 · 권재경 · 김종두 · 표주숙 ·
최광열 · 형남현 · 이흥희 · 변상원 · 박희순 ·
김향란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4. 11. 25.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액(월정수당 1.7% 인상)에 맞춰 월정수당 금액을 변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월정수당 금액 변경 (안 제6조 제2항)
- 1,566,660원 ⇒ 1,593,290원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

(2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33조

나. 예산 조치 : 시행 시 소요예산 확보

다. 집행부의견조회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액(월정수당 1.7% 인상)에 맞춰 월정수당 금액을 변경하고자 내용으로서
-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,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참고자료

【지방자치법】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

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
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9.4.1.>

【지방자치법 시행령】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

-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10.8., 2014.6.3.>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3. 월정수당: 별표 7에 따른 금액